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- 183호

화장품의 생산·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26. 4. 9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- 183호

「화장품의 생산·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27호, 2024. 6. 14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개정이유

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 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시지, 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

로 소재지 멸실,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조)

다.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및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 2조)

3. 의견 제출

이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참조 : 화장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 : zinu5748@korea.kr
- 팩스 : 043-719-3400

화장품의 생산·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장품의 생산·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을 “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관련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우편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시지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.

제3조의 제목 “(보고서 제출기관)”을 “(보고서 제출기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가 성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,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현장조사 등)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,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등록된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면제,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생산실적 등 보고방법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 (제5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 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 료목록을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2조(생산실적 등 보고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----- . 이 경우, 관련 단체의 장은 <u>화장품의 생산·수 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가 누 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에게 우편, 전 화, 이메일, 문자메시지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(보고서 제출기관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보고서 제출기관 등) ① (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단 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가 성 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장품</u></p>

<신 설>

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,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3조의2(현장조사 등)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,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등록된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

조사의 면제, 표창 등 우대조치
를 부여할 수 있다.